

# 염화 메틸렌

[Methylene chloride]

[CAS.No 75-09-2]

| 그림문자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물리적 특성 |      |  |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|--|
|  <p>피부자극/자극성 물질<br/>장기간/반복노출에 대한 장기손상<br/>환경유해성물질</p> | 마취제같은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 또는 기체(40℃이상에서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|  |
|  | 인화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가연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휘발성    | 해당없음 |  |  |
|  | 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3266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증기밀도   | 2.9  |  |  |
|  | 화학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H <sub>2</sub> Cl <sub>2</sub> |        |      |  |  |
|  | 피해야 할 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속, 염기, 산화제, 가연성 물질  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|  |
|  | 노출기준 (TWA)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ppm 175 mg/m <sup>3</sup>    |        |      |  |  |

| 용도 및 사용공정 |   |
|-----------|---|
| 용도        | 커피, 양념, 맥주의 탈카페인제 용매, 페인트 제거 용매, 금속 세척제, 금속 증기 제거, 직물, 에어로졸, 냉매의 용매, polycarbonate 제조, 살충제 및 제초제, 의약품 |
| 취급사업장     | 화학공장, 금속가공공장, 직물 공장, 병원, 농장, 실험실  |
| 주요취급공정    | 염료 제거 공정, 금속 세척 공정, 화합물 합성 공정, 살충 및 제초, 의료처리  |

|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|   |
|--------------|---|
| 주요 노출경로      | 호흡기, 경구, 피부접촉   |
| 급성 건강영향      | 피부 염증, 화상, 가려움증, 피로, 현기증, 팔다리 통증, 메스꺼움, 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만성 건강영향      | 자극, 피부장애, 혈압 변화, 흉통, 환각, 간 이상, 생식계 영향, 뇌에 대한 영향, 간 손상, 폐 손상                     |
| 중독사례         | 염화 메틸렌 취급 화학자에게서 망상과 환각이 보고됨.<br>페인트 제거 작업 근로자에게서 두통, 현기증, 무감각, 과민성, 마비 등이 보고됨. |

| 취급시 주의사항 |   |
|----------|---|
| 사용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</li> <li>- 신체적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것</li> </ul>   |
| 저장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</li> <li>- 환기가 잘 되는 지역에 보관할 것</li> <li>- 열, 화염,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</li> <li>- 밀폐된 용기에 보관할 것</li> <li>- 혼합금지물질과 분리할 것</li> </ul> |

| 사업주 준수사항   |   |
|--|---|
|   | <p>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(작업환경측정기관: ):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.</p>   |
|   | <p>노동부 지정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, 12개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(특수건강진단기관: ) :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.</p>  |
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(MSDS) 등을 교육하고 “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” 토록 한다.</li> <li>-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.</li> <li>-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.</li> </ul> |

### 근로자 준수사항



작업중 환기상태 확인



방독마스크 착용



화학물질 취급 후에는 반드시 용기마개 닫기



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는 흡연 및 취식 금지



작업 후 작업복과 노출된 신체부위는 깨끗하게



초기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